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51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 2.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 (재)금천미래장학회
- 나. 출연내용 : 금천미래장학회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출연금 지원  
※ 출연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확대·활성화
- 다. 출연금 : 1,000,000천원(10억)

---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라.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 기본재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금조성 누적 목표액		3,240	4,400	5,800	7,200	8,600	10,000
연도별 조성 목표액		-	1,160	1,400	1,400	1,400	1,400
재원 구분	구 출 연 금	2,6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 기탁금	640	160	400	400	400	400

## 마. 그 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 연 금	2,600	350	250	500	1,000	500

## 4. 출연의 필요성

- 가.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금 증가로 장학사업 활성화
- 나. 법인·개인 기부금만으로는 기본재산 증자에 한계가 있음
- 다. 장학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재단으로 전환할 기반 마련

## 5.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재)금천미래장학회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형 장학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자·출연은 해당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출연에는 법령의 저촉됨이 없어 적법하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獎學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2.28 조례 제 521호

(전부개정) 2011.10.27 조례 제682호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8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제3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10.14.>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21호, 2007.12.2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금천구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682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미래장학회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다.

부칙(제 88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